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489호

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
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317호('83.09.30)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34호('84.04.27)로 도시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487호('20.11.26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87호('23.07.13)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명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16일

서울특별시장

I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: 변경없음

2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(변경)

가.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

나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사항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2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1) 교통시설

(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(2)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도로;지하공공보도시설)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2) 공간시설

(1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(2) 녹지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라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

1) 정비기반시설의 설치(부담) 계획

[기정]

구분	구역명	시행 면적 (㎡)	대지 면적 (㎡)	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(㎡)	기존공공용지 (무상양도)(㎡)	부담률 (%)
기정	명동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3,697.8	2,782.5	1,068.3㎡	201.9㎡	・ 기준부담률 : 24.53% ・ 부담률산식 $= (1,068.3㎡ - 201.9㎡) / (3,697.8㎡ - 201.9㎡)$ = 24.78%
				① 767.5㎡(도로·공원) ② 153.0㎡(공원내 전시공간) ③ 147.8㎡(공원 내 공유지)	① 54.1㎡(대지 내) ② 147.8㎡(공원 내)	

주1) 대지내 기존공공용지면적(54.1㎡)은 관리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처리하며, 건축물 기부채납계획은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하고 필요시 현금기부채납 등과 연계하여 변경 가능

주2) 공공기여계획, 역사보전계획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논의사항 이행

주3) 변경사유 : 부지내 전시공간을 공원내 전시공간으로 위치 변경

[변경]

구분	구역명	시행 면적 (㎡)	대지 면적 (㎡)	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(㎡)	기존공공용지 (무상양도)(㎡)	부담률 (%)
기정	명동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	3,697.8	2,782.5	1,068.3㎡	201.9㎡	・ 기준부담률 : 24.53% ・ 부담률산식 $= (1,068.3㎡ - 201.9㎡) / (3,697.8㎡ - 201.9㎡)$ = 24.78%
				① 767.5㎡(도로·공원) ② 153.0㎡(공원내 전시공간) ③ 147.8㎡(공원 내 공유지)	① 54.1㎡(대지 내) ② 147.8㎡(공원 내)	

주1) 대지내 기존공공용지면적(54.1㎡)은 관리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처리하며, 건축물 기부채납계획은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하고 필요시 현금기부채납 등과 연계하여 변경 가능

주2) 공공기여계획, 역사보전계획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논의사항 이행

주3) 변경사유 : 부지내 전시공간을 공원내 전시공간으로 위치 변경

○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(관리청) 지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면적(㎡)	비고(관리청)
신규	공원내 문화전시시설	저동 90~10 일대	153	지하1~2층 연면적 1,378.43㎡ (서울특별시)

※ 공원내 문화전시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, 서울특별시장의 운영 및 관리함

※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·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

※ '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합의서' 결정도서에 첨부

※ 공공기여시설의 세부용도는 문화집회시설(이회영 기념관)이며 채납행정청(관리청)은 서울특별시 군형발전정책과로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

2) 정비기반시설의 설치(확보) 계획

- (1)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(관리청으로 무상귀속) : 변경없음
- (2)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면적 : 변경없음

마. 건축물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3. 기타사항 : 변경없음

II. 관련도면(붙임참조)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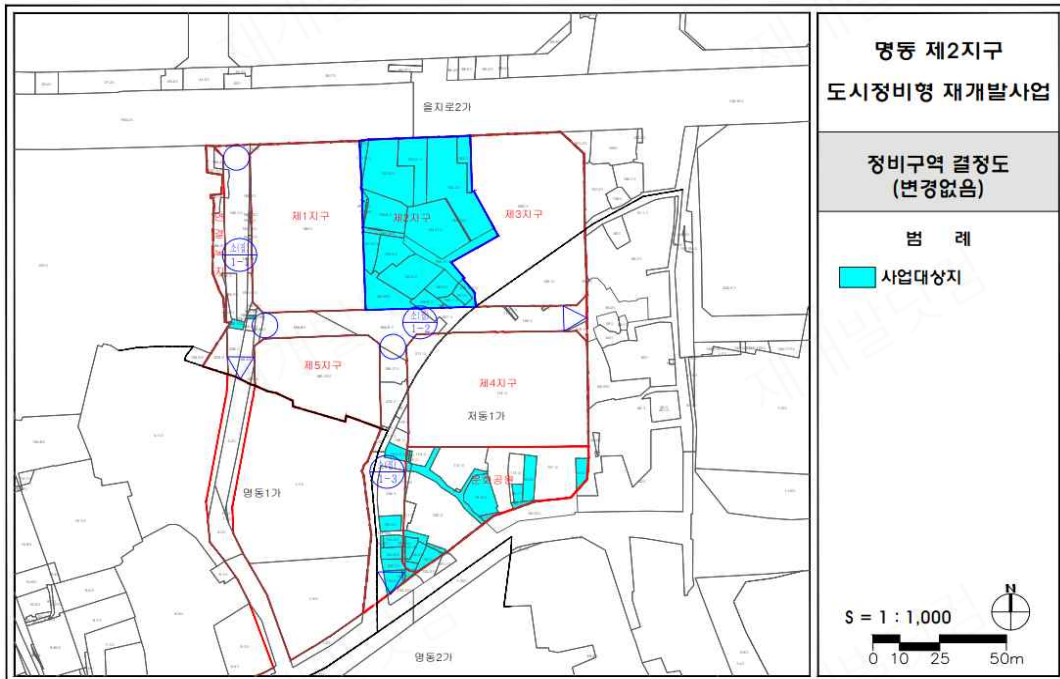
III.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도서 : 생략

IV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(☎02-2133-4648),
중구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2)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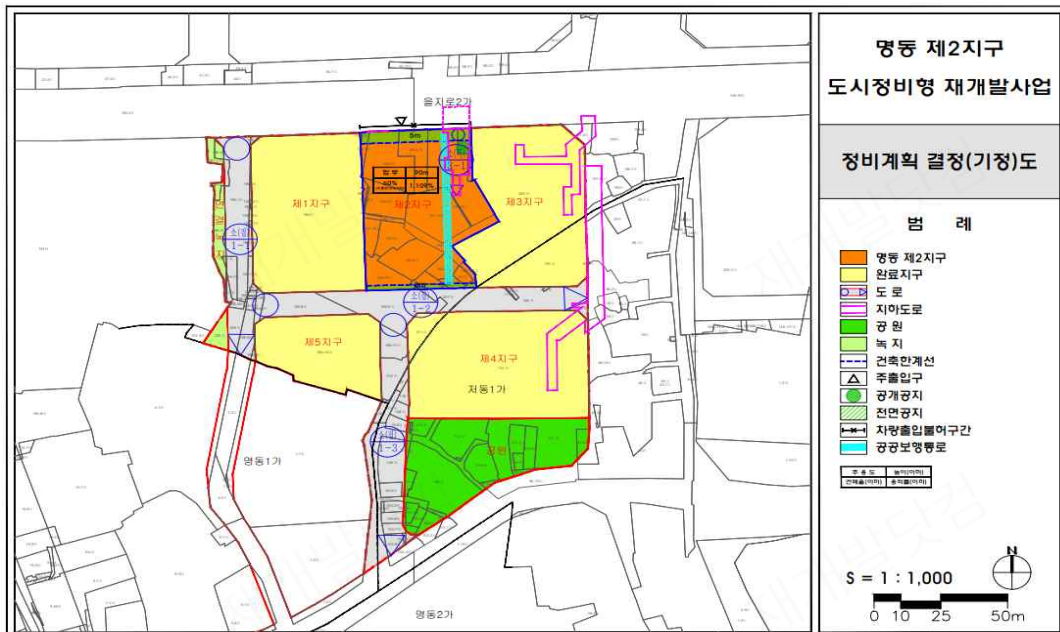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
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□ 정비구역 결정도 (변경없음)



□ 정비계획 결정도 (기정)



□ 정비계획 결정도 (변경)

